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15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4. 20.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0.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중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인천□□중학교장으로, 2019. 12.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

다)는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2.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서, 이에 불복하여 2020. 2.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폭력 및 집단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과 피해학생의 몸싸움으로 식탁 테이블이 청구인 쪽으로 밀려와 청구인이 손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어서 자신의 피해를 알리려고 악의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몇 차례 두들겼을 뿐이고 폭력 의도가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포섭되지 않는 행동이다. 청구인은 손목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린 점 등 이 사건의 전 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을 집단폭력 가담자로 포함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에도 사실을 오인해서 이루어졌거나 사안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의 보호자는 사건 관련 CCTV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

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에만 공개해서, 청구인의 방어권,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피 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사건관련 학생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청구인과 그 보호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학생확인서 및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한 잔반을 치우다 피해학생 발에 손목이 부딪쳤다는 내용과 상이한 점이 존재하나, 피해학생과 ○○○의 싸움으로 인하여 식탁테이블이 청구인 쪽으로 밀려와 손목을 부딪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병원기록 및 진단서는 청구인의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이고, 추가로 제출된 목격자 진술서 내용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렸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집단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불안하고 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확인서 작성하며 조리 있게 어휘표현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학생확인서를 가지고 청구인이 상대방을 ‘가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작성 2019. 12. 13.자 확인서에는 ‘피해학생과 ○○○의 싸움으로 인해 옆질러진 반찬들을 치우려고 손가락을 들었는데 피해학생 발에 손을 맞아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달 16.자 확인서에는 ‘옆질러진 잔반들만 치우려고 손가락을 들었는데 피해학생의 발에 손목을 맞아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서는 ‘싸우니까 식탁이 제 쪽으로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제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나 봐요. 왼손으로 손가락을 들고 살짝 뺏고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 때문에 앞으로 살짝 꼬꾸라지면서 피해학생 하체부위에 손목이랑 접촉이 있어가지고 핫김에 때리게 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은 피해학생과의 접촉 및 식탁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핫김에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CCTV 동영상 확인결과, 피해학생과 청구인은 전혀 접촉이 없었고, 식탁에 청구인이 영향을 받는 모습도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청구인이 웃으며 피해학생을 손가락으로 다섯 대가 아닌 2차에 걸쳐 열 몇 대를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

나. 학교폭력담당교사는 청구인 측에 CCTV안내절차를 안내했고, 이 사건의 경우 다른 학생 측의 CCTV정보공개 요청이 있어서, 2019. 12. 16. CCTV 공개청구 안건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되어서 비공개결정이 되었는바 그 심의위원회 결과를 청구인 측에도 안내하였으며,

CCTV영상은 이 사건 심의절차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자치위원회위원에게만 공개해서 사실판단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학생과 ○○○의 싸움으로 식탁테이블이 움직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목에 상해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상해를 입었다는 왼손에 손가락을 들고서 수차 피해학생을 가격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싸움을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 학교폭력담당교사는 2019. 12. 12. 이 사건발생이 되자 사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건 다음날 2019. 12. 13. 청구인에게 1차 확인서를 받고, 같은 달 16. 다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2차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던 것이 아니며, ‘가격하다’는 국어사전에 ‘손이나 주먹, 몽둥이 따위로 때리거나 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손가락으로 피해학생을 수회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왜곡된 표현으로 볼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변론서면 1, 2),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보충서면(반박서면), 각 제출자료, 식당 CCTV 영상,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 대한 각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019. 12. 12. 점심시간 식당에서, 피해학생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의 머리를 쳐서 둘이 뒤엉켜 싸우자, ◇◇◇◇와 ◆◆◆◆가 피해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짝어 놀렸는데, 그 과정에 식탁 반대편에서 식사를 하던 청구인의 방향으로 식탁이 약간 밀렸다.

청구인은 손가락을 왼손에 들고 피해학생을 5대 때렸고, ○○○○ 옆에 앉아 있던 ▲▲▲이 주먹으로 피해학생을 1대 때렸는데, ♡♡♡가 식탁 위로 올라가서 오른발로 피해학생을 3번 밟고 왼발로 1번 차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다시 피해학생을 손가락으로 10여 대를 더

때렸고, 이 후 ♠♠♠가 식탁 위에서 점프해서 두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학생을 가격했다.

친구들이 모여들어 피해학생과 ○○○을 말리는 과정에도 ◇◇◇가 왼발로 피해학생을 2번 차고 ♠♠♠은 주먹으로 6대를 때렸으며, ◆◆◆가 오른발로 3번 밟았다. ○○○도 피해학생과 떨어진 후 식탁 위 식판을 들어서 쓰러져 있던 피해학생에게 음식물을 붓고 식판으로 3번 짚은 후에 싸움이 끝났다.

위와 같이 피해학생 피해학생이 ○○○과 뒤엉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손가락으로 10여 회 피해학생을 때린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1) 청구인 보호자는 사건 관련 CCTV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만 공개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사실을 문서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 보호자는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2019. 12. 27. 자치위원회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에 학교폭력 담당자와 몇 차례 전화상담을 하면서 사건관련 CCTV영상공개에 관하여도 문의한 일이 있는

데, 학교폭력 담당자는 CCTV영상 공개청구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미 다른 학생들 학부모가 사건 CCTV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청구인 보호자는 이후 별도로 CCTV영상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담당공무원 등의 앞에서 말로써 청구한 사실은 없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보호자는 적법한 CCTV영상공개청구를 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발에 맞거나 식탁이 밀리면서 손목이 접질리는 피해를 입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악의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몇 차례 두들겼을 뿐으로 이는 폭력의도가 없어서 학교폭력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CCTV 동영상 확인결과, 피해학생과 청구인 간에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고, 피해학생과 ○○○이 뒤엉켜 싸우면서 식탁테이블이 약간 청구인 측으로 움직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왼쪽 손목이 접질리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영향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과 뒤엉켜 싸우는 피해학생을 다른 친구들이 폭행하는데, 청구인도 같이 왼손에 손가락을 들고 웃으며 17-18대를 때린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과 달리 CCTV상에는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사안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서, 심각성 낮음 1점, 지속성 없음 0점, 고의성 보통 2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 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 0점 총 3점으로 판정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등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결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할 것이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